



시험확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

시료명	숲으로셀프스테인	신청자	(주)케이씨씨 정몽진, 민병삼
접수번호	CEB-2021-000034	시료채취 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425 (주)동우캠 제품창고
시료채취 일시	2021년 07월 16일	접수일자	2021년 07월 14일
시료채취 방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관련 지침	검사목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
대상건축자재	[] 접착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페인트, [] 실란트(sealant), [] 퍼티(putty), [] 벽지, [] 바닥재, [] 기타		

2.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정	적합
기준 초과항목	없음

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 항목	기준(mg/m ² · h)	시험결과(mg/m ² · h)
TVOC 방출량	2.5 이하	검출한계 미만 (검출한계 : 0.020)
톨루엔 방출량	0.08 이하	검출한계 미만 (검출한계 : 0.00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2 이하	검출한계 미만 (검출한계 : 0.005)

3. 유효기간: 2024년 07월 29일

2021년 07월 30일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변조 확인용 QR code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 목록]

적합확인제품(모델)명	숲으로셀프스테인
면제인정(파생제품) 제품(모델)명	

비 고

1. 뒤쪽에는 앞쪽에서 시험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의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을 기록합니다.
2.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앞쪽의 시험확인 결과 적합을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3. 면제인정제품(파생제품)을 시험확인제품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4서식의 면제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본 서식 뒤쪽에 해당 면제인정제품을 추가하여야 합니다.